

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

2000.6.19

교육사회위원회

1. 제안자 : 충청북도교육감 제출

2. 제안및회부일자

- 제안 : 2000년 6월 13일 제출
- 회부 : 2000년 6월 13일

3. 제안이유

-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중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

4. 주요골자

- 지출건수 : 2건
- 지출결정액 : 312백만원, 지출액 : 312백만원
- 지출내역
 1.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학생 사고 손해배상 합의 배상금 272,835천원
 2. 제천중학교 민간인 사망사고 손해배상 합의 배상금 39,450천원

5.검토의견

- 예비비 지출 2건은
- 법원의 배상판결과 합의에 따라 예비비에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타당하게 지출되었다고 사료됨